

졸업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 : 2015. 02. 06.
 개정 : 2015. 08. 07.
 개정 : 2015. 11. 06.
 개정 : 2016. 04. 08.
 개정 : 2018. 08. 07.
 개정 : 2019. 05. 03.

담당 : 교학팀(02-950-5406)

----- 목 차 -----

제1조(목적)	제1조의2(적용범위)	제2조(학사관리위원회)	제3조(시험분야)
제4조(운영위원회)	제5조(시행 주관부서)	제6조(합격기준)	제7조(성경분야 시험)
제8조(영어분야 시험)	제9조(컴퓨터분야 시험)	제10조(교내시험)	제11조(시험합격처리 절차)
제12조(기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졸업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5.08.07)

제1조의2(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들의 졸업시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15.08.07)

제2조(학사관리위원회) ① 졸업시험에 관한 중요사항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15.08.07)

② 삭제(개정15.08.07)

③ 삭제(개정15.02.06)

제3조(시험분야) ① 졸업시험분야는 성경, 영어, 컴퓨터로 한다. (개정15.08.07)

② 학생은 3개 분야에서 합격기준점수를 인정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컴퓨터 분야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자(새터민)등의 합격기준은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5.08.07)(개정15.08.07)(개정19.05.03.)

제4조(운영위원회) ① 시험분야별로 세부시행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성경분야 : 일립교육위원회(개정19.05.03.)

- 2. 영어분야 : 기초교육위원회(개정19.05.03.)
- 3. 컴퓨터분야 : 기초교육위원회,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위원회(개정19.05.03.)
 - ② (삭제 19.05.03.)
 - ③ (삭제 19.05.03.)
 - ④ (삭제 19.05.03.)

제5조(시행 주관부서) ① 각 분야별 시행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9.05.03)

- 1. 성경 : 일립교육부(개정15.08.07)(개정19.05.03)
 - 2. 영어 : 기초교육원 (개정15.08.07)
 - 3. 컴퓨터 : 기초교육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개정19.05.03)
- ② 시행 주관부서는 해당분야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시행계획 공고, 시험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실시한다.(개정19.05.03.)

제6조(합격기준) 분야별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09.11.20)(개정16.04.08)(개정19.05.03.)

시험 분야	성경	영어	컴퓨터
합격 기준	1. 성서학과는 120점(150점 만점)이상 취득해야 하며,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간호학과는 70점 이상(100점 만점)	1. 외부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 가. TOEIC - 600점 이상 나. TEPS - 483점 이상 다. TOEFL CBT(PBT) - 68점 이상 라.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공인시험과 교내 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	1. 외부공인자격증 및 시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보처리기능사1,2급등과 같은 국내·외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평가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제7조(성경분야 시험) ① 삭제(개정15.11.06)

- ② 성경분야 운영위원회는 성경시험분야의 범위를 결정하여 공고한다.(개정15.11.06)
- ③ 시험횟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삭제(06.4.11)

제8조(영어분야 시험) ① 영어분야 운영위원회는 제6조에 의해 TOEIC, TEPS, CBT(TOEFL)외에 인증 가능한 외부 공인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를 결정하여 공고한다.(개정15.11.06)

- ② 제6조에 의한 합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컴퓨터분야 시험) ① 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인증 가능한 국내외 공인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 외부 공인평가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을 결정하여 공고한다.(개정2015.11.06)

- ② 컴퓨터졸업시험 합격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인정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개정18.08.07)(개정19.05.03.)

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유형	엑셀자격증 1개 + 이외 자격증 1개	국제공인자격증 1개
인정자격증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MOS - 모든 등급 DIAT - 모든 등급 ITQ - A등급	Microsoft사 : MCSE, MCDBA, MCSA, MCSA ORACLE사 : OCJP, OCJD, OCA, OCWCD, OCP CISCO 사 : CCNA, CCDA, CCDP, CCNP, CCIE, CCSP LPI 사 : LPIC Redhat 사 : RHCE ISC 사 : CISSP, CCSP, CCSLP ISACA 사 : CISM CompTIA 사 : Security+, NETWORK+, Server+, Linux+ SAS 사 : SAS

③ ②항의 별표1에 의한 자격증 이외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시행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15.08.07)(개정19.05.03.)

④ ②항의 별표1에 의한 컴퓨터 인정자격증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

제10조(교내시험) ① 영어 및 컴퓨터분야에 교내시험을 실시할 경우 각 분야별 운영위원회가 직접시험하거나 혹은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15.02.06)

② 삭제 (개정15.08.07)

③ 교내 시험 응시자에게는 일정액의 전형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15.08.07)

④ 신청 후 미응시자에게는 전형료 이외의 추가응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15.11.06)

제11조(시험합격처리 절차) ① 학생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합격증 등의 증빙서류를 주관부서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개정06.4.11)

② 교내시험의 경우 각 분야별 위원장은 제 6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이를 통보한다.(개정15.11.06)

제12조(기타)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개정15.02.06)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2001, 2002학년도 입학자는 영어, 컴퓨터에 한하여 해당 교양교과 과목의 시험으로 졸업시험을 대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6조(합격기준)의 영어시험분야 합격기준은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되며 2017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의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